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4. 9. 3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05호로 2024년 9월 13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폭염 및 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규정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안 제4조는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의무화
- 안 제5조 ~ 제7조는 실태조사 실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의 구체화로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에 따른 계획과 시행 방법 규정
-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 검토결과

- 흔히 생각하는 자연재해가 태풍과 호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자연재난으로 일어나는 인명피해 현황 중 원인별로 다양함을 알 수 있음. 자료를 살펴보면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지만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폭염은 부상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으로 직결될 정도로 예방의 중요함을 체감할 수 있음.

☐ 최근 3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단위:명)

구분	피해현황	태풍	호우	강풍	폭염	한파	소계	총계
2020년	사망	2	41	0	29	0	72	103
	실종	0	3	0	0	0	3	
	부상	10	18	0	0	0	28	
2021년	사망	0	3	0	39	0	42	65
	실종	0	0	0	0	0	0	
	부상	1	2	0	0	20	23	
2022년	사망	11	17	0	34	0	62	94
	실종	0	2	0	0	0	2	
	부상	28	2	0	0	0	30	

- 우리구 양산대여소의 경우 기존에는 없던 폭염 예방대책으로 2021년부터 시작되었고, 2024년의 경우 무더위 쉼터¹⁾를 191개소에서 193개소로 확대 운영, 수경시설

1)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복지관 및 복지시설, 안전숙소, 노숙인쉼터

및 물놀이장 운영 기간의 연장, 그늘막 신규 추가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한파 예방 및 지원도 한파쉼터 확대 운영과, 온기텐트와 온열의자 등의 한파 저감시설 운영도 그 사례임을 알 수 있음. 특히 온열의자의 경우 최근 버스정류장 57개소에 신규 설치 운영한 사례로 냉·온열의자를 설치하여 폭염·한파에 모두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한 저감 시설로 보임. 앞서 기술한 내용으로 우리구가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결과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후속 절차로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 추진부서에서 재난도우미에게 상황 전파가 되어 각 취약계층에 안부확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의 전파 등도 현행 실시하고 있음.

□ 재난도우미 폭염·한파 전달체계

재난도우미 연락처 DB 구축	→	재난특보 제공 (상황전파 시스템)	→	재난 특보사항전달	→	방문·안부전화 안전확인· 건강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재난 추진부서		기상청 → 도시안전과 → 재난 추진부서		재난 추진부서 → 재난도우미		재난도우미 → 취약계층

- 이 밖에도 우리구에서는 폭염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실외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폭염예방 구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한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을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에서는 16개 자치구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그 중 한 개 자치구가 폭염·한파를 동시에 다루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현행 대책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빠져있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에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동안 시행 중인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사업의 확대와 지원 근거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한편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부서별(분야별) 폭염대책 역할 요약

폭염대책 추진사항	추진부서
○ 폭염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 － 폭염종합지원 상황실 운영	도시안전과
○ 독거어르신 취약계층 보호대책	어르신장애인과
○ 노숙인 및 쪽방주민 특별보호 대책	생활보장과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건강증진과
○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한 도로 물청소 강화	청소과
○ 야외근로자 폭염 안전대책 추진	일자리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주거사업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 폭염대비 가스취급시설 안전관리 추진	환경과
○ 폭염예방 구민행동령 등 홍보	홍보미디어과
○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의약과
○ 폭염저감시설 설치 운영 － 그늘막, 그늘목, 쿨루프, 쿨링포그	도시안전과 푸른도시과 어르신장애인과
○ 무더위쉼터 설치·운영 － 경로당, 복지관, 작은도서관, 노숙인쉼터, 동주민센터	도시안전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미래교육과 동주민센터
○ 양산대여소 설치·운영	동주민센터

□ 부서별(분야별) 한파대책 역할 요약

한파대책 추진사항	추진부서
○ 한파 상황관리 총괄 및 보고	도시안전과
○ 한파 쉼터 및 저감시설 운영	도시안전과 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동주민센터
○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활동	어르신장애인과
○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보호활동	생활보장과
○ 한파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 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건강증진과
○ 전기, 가스 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환경과
○ 동절기 대비 건축공사장, 빈집 등 안전점검	건축과
○ 공동주택 대상 한파 행동요령 및 특보상황 전파	주택과
○ 한파 행동요령 및 특보상황 등 홍보·전파	홍보미디어과
○ 한파특보 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도시안전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건강증진과 환경과

참고 자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7. 3. 21.>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4. 9. 3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06호로 2024년 9월 13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규모 시민밀집이용시설에
대하여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확대 적용하여 사각
지대 없는 꼼꼼한 진단과 검증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의·의결·자문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인원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기타 용어 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는 기술자문위원회의 목적 구체화와 용어 정비.
- 안 제2조는 심의·의결사항, 자문사항 규정 변경 및 신설.
- 안 제3조제1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 변경 규정.
- 안 제5조, 제6조는 용어 정비와 소위원회 운영규정 변경 및 신설.
- 안 제7조~제9조와 제11조 및 제13조는 용어 정비

○ 검토결과

- 대형공사 및 주요 시설물에 적용하는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 체계를 중·소규모 구민 이용 시설물에도 확대 적용하여 안전 및 품질의 향상과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2016년 5월 개통하여 2023년 1월 발생한 도림보도육교

처짐 사고는 보도육교 등의 특성상 면밀한 설계 및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총사업비 약 28억원으로 설계심의 절차를 미이행하여 심의 대상을 사업비 규모로 구분하는 현 제도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임. 또한 기존 조례상으로는 3종 시설물로 서울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진단 심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개정 전·후 주요 변경 내역

구분	규모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설 계 심 의	100억원 이상 건설 공사	市 건설기술심의위원회	市 건설기술심의위원회	50억원 이상의 교량, 북계조물 등 주요시설물 설계는 市 심의 유지
	100억원 미만 건설 공사	미심의	區 기술자문위원회	
진 단 심 의	1종 시설물	모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市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시·사업소·공단 시설물 → 市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3종 시설물		자치구 소관 시설물 → 區 기술자문위원회	
	비법정 시설물		區 관리부서 판단	

- 안 제2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조문이 그 주요 내용으로 현재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만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와 진단 심의를 거쳤으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100억원 미만의 공사도 구 기술자문 위원회에서 설계심의 기능이 부여될 경우 설계 적정성 미검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시설물 진단 확대에 따른 안전 진단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구에서 소관 시설물을 적재적소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시설물 상태의 원인분석과 함께 신속한 보수가 진행되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로 기존과 다른 확대된 분야의 전문가 확보에 타당한 방안으로 적정한 규정 변경으로 보임.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안전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로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건축물 및 시설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36.7%로 응답자의 1/3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5년 전과 비교하여 안전해졌다고 인식한 응답도 32.3% 밖에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같은 조사에서 5년 후 안전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6%로 확인되어, 이는 제도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안고 가야 함을 보여주는 통계 결과라 할 수 있음. 해당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방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자치구	조례명
1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7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9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0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12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13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4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15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16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참고 자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③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④ 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 ⑥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 4. 23., 2020. 12. 8.>
- ⑩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단,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9.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10.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3.5.15., 2007.7.30., 2007.10.1., 2007.12.26., 2010.9.30., 2021.12.30.>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신설 2019.12.31., 2021.12.30.>
1.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